

#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			
회의소집일시	2024년 2월 06일(화) 17:20		
회의일시	2024년 2월 28일(수) 11:00		
재적의원	11명	참석의원	9명
회의장소	뉴밀레니엄관 1305호 회의실(회의장소 변경)		
회의안건	가. 학칙 개정(안) 심의		
회의내용			

## 1. 안건

가. 학칙 개정(안) 심의

## 2. 주요 내용

가. 학칙 개정(안) 심의 : 세부사항 [붙임1] 참조

1)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의 3, 4학년 편입 : 제15조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개정에 따른 전과 제도 개정 : 제20조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청 자격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전과 횟수	최대 2회	- (제한없음)

3) BITS(Busa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 공유대학의 공동교육과정,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LiFE 2.0) 운영을 위한 융합연계전공 신설 : 제34조, 제38조의2

학과 및 전공	구분	참여학부	비고
스마트 해양모빌리티	공학사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정보보안학과	
ESG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시각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제품인터넷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학과, 광고홍보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스마트 국제물류전공	스마트 국제물류 경영학사	국제통상학과, 국제물류학과	학위종 신설
스마트 항만물류전공	스마트 항만물류 공학사	국제통상학과, 국제물류학과	학위종 신설
클린에너지전공	클린에너지 공학사	-	학위종 신설
평생교육컨설팅전공	평생교육학사	사회복지상담학과, 스포츠레저산업학과	학위종 신설

4)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협정 및 협정에 따른 규정 등 우선 적용 : 제34조의3

5) 편입생에 대한 외부 교류학점의 범위 확대 : 제45조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교류 인정학점	15학점이내	졸업에 필요한 잔존 학점의 2분의 1 이내

간서명 대표	의장	이중아	의원	장혜아	의원	김승호
-----------	----	-----	----	-----	----	-----

6) 신입생 등록금 반환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 제52조

- 개강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및 제9항 개정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선발인원 및 이수학점 확대

: 제83조, 제84조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선발인원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학점신청	매학기 9학점 이내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이내

### 3. 위 안건에 관한 심의 결과

- 심의 결과에 대한 의원별 동의 가부

#### 가. 학칙 개정(안) 심의

의장	이종의	可 / 不	의원	이일천	可 / 不	의원	김재율	可 / 不
부의장	류성경	可 / 不	의원	이수빈	可 / 不	의원	박이봉	可 / 不
의원	김수화	可 / 不	의원	정승홍	可 / 不	의원	장혜미	可 / 不
의원	정주연	可 / 不	의원	이동규	可 / 不			

#### • 최종심의 결과

※ 회의는 재적 평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함.

※ 회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 가. 학칙 개정(안) 심의

재적 의원	참석의원	可	不	최종 승인여부
11명	9명	9명	0명	可 / 不

**[붙임1]****1. 학칙 개정(안)****(1) 규정 개정 사유**

- 의료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의 3학년 또는 4학년 편입 허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개정에 따라 2학년 이전 전과 허용
  - 폐과의 복학생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에서 횟수 제한 폐지로 제5항 일부 문구 삭제
- BITS(Busa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 공유대학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융합연계전공 및 학위종 신설
-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운영을 위한 융합연계전공 및 학위종 신설
-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 대학별 상이한 내용이 많아 각 협약 우선 적용
  -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별도의 규정화 되어 있어, 국내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우선 적용 명시
- 편입생에 대한 외부 교류학점의 범위 확대
- 대학 행정 절차에 미숙한 신입생에 한하여 등록금 반환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및 제9항 개정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선발인원 및 이수학점 확대

**(2)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p><b>제15조(편입학) ① - ② (생략)</b></p> <p>③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다른 학부의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모집인원은 해당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준한다.</p> <p>④ 본 대학교와 연계교육이 체결된 전문대학에서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졸업자)는 정원 외 3학년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모집인원은 해당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준한다.</p>	<p><b>제15조(편입학) ① - ② (현행)</b></p> <p>③ - ④ (현행)</p> <p>⑤ 의료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의 양성관련 모집단위와 동일한 전문학사 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졸업자)는 정원 외 전형 중 해당 전형모집에서 3학년 또는 4학년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모집인원은 해당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준한다.</p>	항 신설
<p><b>제20조(전과) ① 2개 학기 이상</b> 이수한 재학 중인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전과(학과이동 및 전공변경)할 수 있다. 단, 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 후 전과할 수 있다.</p> <p>② 전과는 2학기에 한하며, 매학기 초에 할 수 있다.</p>	<p><b>제20조(전과) ① 1개 학기 이상</b> 이수한 재학 중인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전과(학과이동 및 전공변경)할 수 있다.</p> <p>② - ④ (현행)</p>	자구수정

간서명 대표	의장	이 <u>재우</u>	의원	장 <u>희아</u>	의원	김 <u>경수</u>
-----------	----	-------------	----	-------------	----	-------------

현 행	개 정	비고
<p>③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0%까지 허용한다.</p> <p>④ (생략)</p> <p>⑤ 폐지된 전공의 복학생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⑤ 폐지된 전공의 복학생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p>	자구삭제
<p>제34조(졸업·학위·학위취소) ① - ② (생략)</p> <p>③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 1)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단,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증서(별지서식 2)를 수여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34조(졸업·학위·학위취소) ① - ② (현행)</p> <p>③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 1)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단,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증서(별지서식 2)를 수여 할 수 있다.</p> <p>④ (현행)</p>	별표 개정
<p>제34조의3(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 ② (생략)</p> <p>③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④ (생략)</p>	<p>제34조의3(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 ② (현행)</p> <p>③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④ (현행)</p> <p>⑤ 국내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정 및 협정에 따른 규정 등을 우선 적용한다.</p>	항 신설
<p>제38조의2(융합연계전공) ① (생략)</p> <p>②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융합연계전공은 [별표 5]와 같다.</p>	<p>제38조의2(융합연계전공) ① (현행)</p> <p>②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융합연계전공은 [별표 5]와 같다.</p>	별표 개정
<p>제45조(학점인정) ① - ⑥ (생략)</p> <p>⑦ 본조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생은 재학 중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외국 대학 및 첨단분야 국내 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간 협약으로 정한다.</p>	<p>제45조(학점인정) ① - ⑥ (현행)</p> <p>⑦ 본조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생은 학점심사 인정 후 졸업에 필요한 잔존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외국 대학 및 첨단분야 국내 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간 협약으로 정한다.</p>	자구수정
<p>제52조(등록금 반환) ① (생략)</p> <p>② 등록금 반환기준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p>	<p>제52조(등록금 반환) ① (현행)</p> <p>② 등록금 반환기준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단, 당해년도 신입생의 최초학기 등록금은 개강일 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p>	단서 추가
<p>제82조(목적) 열린교육사회 체제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산업체근로자 및 일반인의 교육확대를 위하여 시간제 학생 등록제를 둔다.</p>	<p>제82조(목적) (현행)</p>	
<p>제83조(자격 및 선발) ① (생략)</p> <p>② 선발이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p>	<p>제83조(자격 및 선발) ① (현행)</p> <p>② 선발이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p>	자구수정
<p>제84조(학점신청) ① 시간제학생 등록 이수학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84조(학점신청) ① 시간제학생 등록 이수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p>	자구수정

간서명 대표	의장	이경아	의원	장규아	의원	김경숙
-----------	----	-----	----	-----	----	-----

현 행	개 정	비고
② 등록금은 학점당 등록제를 한다.	② (현행)	

**(3)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2. 학사학위수여표**

학위종별	학과 및 전공	비고
(생략)	(생략)	
작업치료학사	작업치료학과	
공학사	전자공학과, …, 화장품학과	
(생략)	(생략)	
디자인학사	디자인학전공, …, Digital Design학과	
(생략)	(생략)	
융합학사	글로벌 K-컬처 영화/드라마융합연계전공, 글로벌 K-컬처 웹툰애니메이션융합연계전공, 글로벌 K-컬처 음악/공연융합연계전공, 글로벌 K-컬처 문학/웹소설융합연계전공	
문학사/이학사/공학사 /예술학사 중 택1	자기설계융합전공	

주) 1)-4) (생략)

**[개정] 별표 2. 학사학위수여표**

학위종별	학과 및 전공	비고
(현행)	(현행)	
작업치료학사	작업치료학과	
공학사	전자공학과, …, 화장품학과, <u>스마트 해양모빌리티</u>	
(현행)	(현행)	
디자인학사	디자인학전공, …, Digital Design학과, ESG디자인전공	
(현행)	(현행)	
융합학사	(현행)	
<u>스마트 국제물류</u> <u>경영학사</u>	<u>스마트 국제물류전공</u>	
<u>스마트 항만물류</u> <u>공학사</u>	<u>스마트 항만물류전공</u>	
클린에너지 공학사	클린에너지전공	
<u>평생교육학사</u>	<u>평생 교육컨설팅전공</u>	
문학사/이학사/공학사 /예술학사 중 택1	(현행)	

주) 1)-4) (현행)

간서명 대표	의장	이광호	의원	장희경	의원	2024.02.28.
-----------	----	-----	----	-----	----	-------------

## [현행] 별표 5. (융합)연계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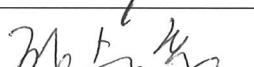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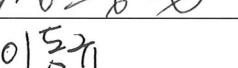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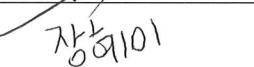
(융합)연계전공	참여학부(전공)	학위
(생략)	(생략)	(생략)
글로벌 K-컬처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영화과	융합학사
자기설계융합전공	3개 학과 이상의 전공교과목으로 구성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은 전공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예술학사 중 택1

## [개정] 별표 5. (융합)연계전공

(융합)연계전공	참여학부(전공)	학위
(현행)	(현행)	(현행)
글로벌 K-컬처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영화과	융합학사
<u>스마트 국제물류</u>	국제통상학과, 국제물류학과	<u>스마트 국제물류</u> 경영학사
<u>스마트 항만물류</u>	국제통상학과, 국제물류학과	<u>스마트 항만물류</u> 공학사
<u>스마트 해양모빌리티</u>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정보보안학과	공학사
<u>클린에너지</u>	二	클린에너지 공학사
<u>평생교육컨설팅</u>	<u>사회복지상담학과</u> , <u>스포츠레저산업학과</u>	평생교육학사
<u>ESG디자인</u>	시각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제품인터넷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학과, 광고홍보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디자인학사
자기설계융합전공	3개 학과 이상의 전공교과목으로 구성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은 전공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예술학사 중 택1

간서명 대표	의장	이경아	의원	장혜미	의원	김민경
-----------	----	-----	----	-----	----	-----

#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						
회의소집일시	2024년 2월 06일(화) 17:20					
회의일시	2024년 2월 28일(수) 11:00					
재적의원	11명	참석의원	 명			
회의장소	뉴밀레니엄관 1305호 회의실(회의장소 변경)					
회의안건	가. 학칙 개정(안) 심의					
참석자 명부						
순번	구분	성명	서명(인)	비고		
1	의 장	이종익		교수		
2	부의장	류성경		교수		
3	의 원	김수화		교수		
4	의 원	정주연		교수		
5	의 원	이일천		직원		
6	의 원	이수빈		직원		
7	의 원	정승홍		직원		
8	의 원	이동규		학생		
9	의 원	김재율		학생		
10	의 원	박이봉		학외		
11	의 원	장혜미		조교		
12	간 사	남수정				